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8-18호

「순천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순천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 관내 도시공원의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를 통하여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시공원의 특색에 적합한 다양한 방식의 관리운영을 통해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목적
- 안 제2조 정의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 안 제4조 적용 범위
- 안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 안 제6조 시민참여형 공원조성
- 안 제7조 시민참여형 공원관리
- 안 제8조 시민참여위원회
- 안 제9조 사무의 지휘·감독

○ 안 제10조 시행규칙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 12. ~ 1. 17.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1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w1028@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란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방식을 말한다.
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민참여형 공원조성) ① 시장은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공원조성 프로그램(이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② 시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민참여형 공원관리) ①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3.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도시공원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자격, 참여의 범위 및 참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민참여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2. 효과적인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3.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2. 순천시의회 의원

3. 도시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4. 그 밖에 도시공원의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지휘·감독) ① 시장은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